

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0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20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학교별,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, 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체와 협의체의 역할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체 활동의 법적 안정성 및 실효성을 도모하며, 일부 조문의 인용조문 오기(誤記),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학교별,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“교육감”에서 “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”으로 하고, 협의체 설립을 위하여 지역주민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 제1항).
- 교육감은 서울시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, 도시형캠퍼스 설립 요구가 제기된 지역에 대하여 설립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며, 설립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10조제2항 및 안 제10조제3항 삭제).

-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,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(안 제10조제2항 및 안 제10조제3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”을
“도시형캠퍼스 설립기준은 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”
으로, “도시형캠퍼스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”을
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”으로, “설립할 수 있다”를
“적용된다”로 하고, 안 같은 조 제3항 중 “때에는 교육감 소속”을
“때에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제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”으로,
“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 제3조”를 “「고등학교 이하
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3조”로, “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
있고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안 같은 조
제2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을
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”를

“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” 로, “전문가,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각” 을 “전문가,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” 으로, “협의체” 를 “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안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안 같은 조 제4항 중 “도시형캠퍼스 협의체” 를 “협의체” 로 한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.

1. 도시형캠퍼스 설립 · 운영에 관한 사항
2. 도시형캠퍼스 설립 ·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3.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
4.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.

안 제11조 중 “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” 를 “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” 로, “서울특별시” 를 “지방자치 단체” 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제5조(도시형캠퍼스의 설립) ① (생략) ② 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 초·중학교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.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 소속 적정규모학교육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	제5조(도시형캠퍼스의 설립) ① (조례안과 같음) ② 도시형캠퍼스 설립기준은 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----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----- 적용된다. ③ ----- ----- 때에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-----
제6조(설립 기준) ① 교육감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고,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. ②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·설비기준은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을 따른다.	제6조(설립 기준) ① -----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----- ---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3조 ----- - 범위에서----- ----- 범위----- -----.
제10조(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교육감	제10조(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교육감

조 례 안	수 정 안
<u>은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,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각 학교별,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1.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2.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3.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</u> <u>4.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지역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요청하는 경우,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요구</u>	<u>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-----</u> <u>----- 전문가,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</u> <u>는 -----</u> <u>-----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---</u>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.</u> <u>1.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2.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3.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</u> <u>4.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협의체의</u>

조 례 안	수 정 안
<u>가 제기된 지역에 대하여 설립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, 설립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u> ④ <u>도시형캠퍼스 협의체</u>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.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<u>적정 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</u> 위하여 중앙정부, <u>서울특별시</u>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<u>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.</u> ④ <u>협의체</u> ----- ----- -----.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 <u>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</u> ----- <u>지방자치단체</u> - -----.